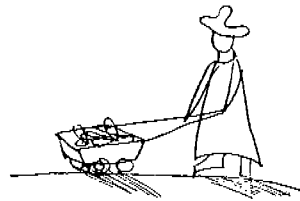


양 호 교 사 의 역 할

이 선 자

<서울대보건대학원조교수>



양호교사의 역할을 教育法 第75條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養護教師는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다음 事項에 留意하여 이를 直接擔當 또는 協力하여 學校保健管理의 充족를 기한다. ㉑ 學校保健教育에 관한 사항. ㉒ 學校保健管理의 年間 및 月間計劃 立案에 관한 사항. ㉓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評價, 健康相談, 健康管理 등에 관한 사항. ㉔ 傳染病 豫防 및 治療조치에 관한 사항. ㉕ 學校에서 일어나는 救急治療와 조치에 관한 사항. ㉖ 學校에서 實施하는 寄生蟲驅除, 結核檢診, 口腔保健, 身體檢査, 기타保健管理 등에 관한 사항. ㉗ 學校 環境정화의 유지 改善에 관한 사항. ㉘ 學校給食의 유지 改善과 虛弱兒의 保健指導에 관한 사항. ㉙ 學校 養護室의 運營管理에 관한 사항. ㉚ 기타 學校保健管理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養護教師는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管理를 잘하기 위해 健康計劃 作成에서부터 計劃된 事實의 實行過程 및 評價에 까지 밀접한 관계를 맺고 學校保健에 관련되는 여러職員들과 協助를 해 나가야 한다. 즉 養

護教師의 業務는 學生과 敎職員의 健康管理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실시를 하는 것으로 時代的 變化에 따라 그業務의 한계도 조금씩 변하여 왔다.

1896年 學校保健事業이 처음 시작된 시기에는 傳染病管理가 主目的으로서 學生들이 學校에 와서 傳染病 蔓延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그 業務였으나 현재는 健康의 개념도 변했지만 學校保健의 範圍도 확대되어 學生과 敎職員의 健康管理도 포괄적인 管理를 해야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肉體의인 健康管理뿐 아니라 精神的, 혹은 心理的 및 社會的인 健康管理를 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養護教師의 하는 일은 保健看護員의 役割과 根本的으로 같은 것으로서 地域社會의 全般的인 保健問題를 항상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 目的에 유의하여 協助토록하고 學校와 家庭을 연결하는 媒介者로서 地域社會 保健事業에 參與하고 學校內에서는 學校保健事業 業務遂行의 담당자로서 學校保健의 法的인 책임을 지고있는 校長을 잘 보필하여야겠다.

그러면 養護教師가 校長을 보필하여야 할 學校保健事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健康에 대한 명백한 概念 및 健康과 教育過程과의 關連性을 學生과 敎職員들에게 이해시키는 일. ② 學生들의 健康管理가 學校의 責任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 일. ③ 學校保健事業의 目的達成을 하기 위하여 學校의 責任과 目標을 잘 알고 있도록 校長先生님과 敎職員들을 이해시키는 일. ④ 學校의 行政體制안에 學校保健事業을 받아들일도록 하는 일. ⑤ 포괄적인 學校保健事業의 내용을 그 範圍와 구체적 內容을 敎職員 및 學生들이 알고 있도록 하는 일. ⑥ 學校의 敎科過程內에서 保健教育의 적절한 配置와 時間表의 配定 및 必要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일. ⑦ 學校의 敎職員 모두가 자자의 責任과 業務를 수행하도록 해주며 이것을 뒷받침 해주는 裝備 및 物資供給에 必要한 經濟的 배려를 하는 일. ⑧ 精密하고 확고하게 건축된 建物を 安全하게 유지토록 하는 일. ⑨ 적당한 시설을 갖춘 學校運動場을 유지시키는 일. ⑩ 衛生的인 변소시설을 갖추고 管理하는 일. ⑪ 더운 물이 나오는 洗面시설을 갖추는 일. ⑫ 난방, 換氣, 照明 및 적절한 椅子, 하수처리 시설등이 公衆保健學的 基準에 합당토록 지키는 일. ⑬ 體育教育의 실시, 길이, 횡수와 授業時間의 길이,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채택과 훈육의 형태나 숙제의 量등이 學童들의 健康管理에 無理가 되지않는 理想的인 것이 될 수 있도록 學校의 제반 活動計劃을 조정하는 일. ⑭ 學校에서 점심을 給食시켜야 하는 경우 더우고 營養價 높은 점심이 주어지도록 하는 일과 적당한 점심시간과 부수적으로 必要한 시설을 갖추고 관리하는 일. ⑮ 學校에서 授業도중 休息이 必要한 兒童에게 될 수 있는 機會를 볼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마련하는 일. ⑯ 바람직한 保健教育 및 좋은 健康習慣을 길러 줄 수 있는 모든 形態의 조정된 교과과정은 갖는 일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重要한 것은 敎師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敎科過程을 計劃하고 연구하여 발전토록 動機化 시키는 일. ⑰ 건전한 敎師 對 學生의 人間關係를 발전시키도록 敎師들을 뒷받침 하는 일. ⑱ 必要한 경우에 醫師의 診察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 두는 일 등으로서 이상에서 언급한 業務가 잘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學校의 保健事業이 근본적으로 잘 되어나갈 것인가가 좌우되게 된다.

다음은 學級擔任을 맡고있는 敎師들의 협조를 얻거나 담임교사에게 委任을 시킴으로서 業務遂行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로서 ① 學生들을 매일 관찰하여 行動이나 모습에 있어서 正常에서 벗어난 學生들을 발견하여 健康障礙者의 早期發見과 조치를 취하는 일. ② 身體檢査나 健康評價時에 身長이나 體重을 측정하는 일. ③ 視力이나 聽力 障礙兒童을 發見하는 일과 判別檢査의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키는 일. ④ 學生들에게 保健教育이 意味있고 재미있는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現實的으로 日常生活에서 얻을 수 있는 經驗을 하도록 계획하고 指導하는 일. ⑤ 敎室이나 敎師自身이 거처하거나 使用하는 場所의 環境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지시키는 일. ⑥ 學生들이 칫과적 문제가 있을때 이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일. ⑦ 全般的인 學校保健事業을 發展시키기 위하여 校長, 學父母, 醫師, 齒科醫師, 保健看護員 및 養護敎師와 기타 保健團體의 하는일에 적극 協力토록 하는 일. ⑧ 분명치는 않지만 健康上的 문제를 갖고있는 듯한 學生을 發見하는 경우 그 學生을 養護敎師나 學父母에게 연락하거나 조퇴시키고 조퇴시킨후 그 兒童이 필요한 치료를 받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일. ⑨ 保健教育이나 體育時間 이외의 學習時間에도 필요한 경우 좋은 건강습관의 形成이나 健康에 대한 理解를 도움거나 실천해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기회를 最大로 利用하는 일. ⑩ 必要한 경우에 國家에서 정한 傳染病管理法에 따라 學生을 學校에 登校시키거나 등교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 ⑪ 學生들의 健康記錄簿를 만들어두고 계속 記錄을 하는 일. ⑫ 學生健康記錄簿의 記錄을 분석하고 활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理解하고 學生들의 必要에 맞는 教育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⑬ 必要한 경우에 적절한 應急處置을 하는 일 등을 들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內容을 종합하여 養護敎師의 역할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學校保健教育의 실시 | 및 保健教育 ⑩傳染病 및 기타 疾病관리 |
| ② 健康檢査(或은 身體檢査)의 계획 및 실시 | ⑫ 學校環境 및 衛生관리 |
| ③ 健康相談 실시(學童, 教師, 學父母에게) | ⑬ 각종 健康記錄과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일 |
| ④ 學童, 教師들의 健康觀察로 健康障碍의 初期發見 및 조치 | ⑭ 豫防接種事業에 대한 실시 및 협조 |
| ⑤ 應急處理 및 救急藥品 관리 | ⑮ 家庭通信을 통한 學父母의 保健教育실시 및 필요한 경우에 家庭訪問을 실시하는 일 |
| ⑥ 學校給食관리 및 學童과 教師의 營養관리 | ⑯ 地域社會 保健事業 活動에 참여하는 일과 專門看護團體에 참여하는 일 |
| ⑦ 身體清潔 및 衣生活 지도 | ⑰ 養護室관리 |
| ⑧ 寄生虫 驅除 및 관리 | |
| ⑨ 學童과 教師들의 結核관리 ⑩口腔保健관리 | |

>공 고<

“갱신면허증 교부안내

1974년 11월부터 현재까지도 실시되고있는 의료인 면허증 갱신업무가 1975년 1월 10일로, 대강 마무리되었습니다. 본회가 해외회원의 위임을 받아 실시한 갱신업무는 총접수자 2,400여명중 1,960명분이 일차로, 교부됐으며 나머지 200여명중 요보완자 200여명과 접수가 늦어진 회원은 2차로 교부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주재공관을 통해 접수된 회원의 면허증은 해외주재공관을 통해 본인에게 교부될 것입니다. 국내 각 지부(지역)에서 접수한 회원의 면허증은 각 접수처를 통하여 교부됩니다. 금번 면허증이 교부되므로써 회원 여러분은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면허증이 갱신되지 못한 회원은 갱신된 면허증이 교부될 때까지 면허가 잠정적으로 정지되어 해외취업에 따른 수속절차가 불가해지며 제증명의 발급도 정지된다.
2. 매년 실시하는 의료인 정기신고에 계속 3회이상 누락된 자는 자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며 금년 5월에는 다시 의료인 신고가 실시되니, 누락자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3. 면허갱신 신청자증 보완을 요하는 사람은 즉시 본회 또는 소속지부에 확인하여 조속한 절차를 밟도록 할 것.
4. 해외 회원으로서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았거나 의심이 있는 회원은 교국의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속히 본회에 확인하여 보완절차를 끝내도록 부탁드린다.

서울시지부는 1월 28일부터 교부중에 있습니다. 회원은 갱신접수증, 도장, 주민등록증, 회원증을 지참하시고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바라며 단체 접수는 기관장(간호원)의 도장, 접수서명단, 위임장을 지참하시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